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4월 23일

원당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 *	정 * 1976-02-22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(원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4-23
김 *명	김 *명 1981-08-25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(원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4-23
최 *순	최 *순 1988-12-06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(원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4-23